

2027학년도 학교법인 대원학원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



학교법인 대원학원이 유지·경영하는 대원여자고등학교의
2027학년도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5일

학교법인 대원학원 이사장

1 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(1과목, 1명)

법인명	임용예정 학교	선발예정과목 및 인원	비고
		수학	
학교법인 대원학원	대원여자고등학교	1명	
	합계	1명	

*『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』에 의거 분리·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음

2 응시자격

가. 선발분야별 응시자격

선발분야	응시자격
중등학교 교사	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【2027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】

나. 응시연령

- 제한 없음. 【단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7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않는 자】

다.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

-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는 2027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어 정상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음.
-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,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「교육공무원 임용령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.

라. 응시자격 제한

-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.
 -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의3(임명의 제한) 제5항,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3(채용의 제한) 제1항에 해당하는 자
 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0조의4(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 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1조의2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제1항에 해당하는 자
 -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1조의3(응시자격) 제2항에 해당하는 자

-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제11조의4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제2항에 해당하는 자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 제1항에 해당하는 자
-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제1항에 해당하는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제1항에 해당하는 자
-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

3 전형 방법 및 반영 비율

구 분	세 부 내 용	비율	비 고
1차	필기 (교육청 위탁)	30%	5배수 선발
2차	자기소개서	5%	1차 합격자
	교수학습능력평가 (지필, 수업실연)	15%	
	심층면접	20%	
3차	법인면접	30%	

4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 기간 : 2026. 10. 12.(월) 09:00 ~ 10. 16.(금) 18:00

나. 접 수 처 :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(<https://edurecruit.go.kr/>)

다. 제출 방법 : 인터넷 접수

5 시험 일정

□ 제1차 시험 (교육청 위탁) - **사립복수지원제**

○ 시험 일정 및 장소

전형별	전형 요소	대상	시험일	시험시간	시험장소
제1차 시험	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	지원자 전체	2026년 11월 28일(토)	-	서울시교육청 공고문 참고

※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공고

□ 제2차 시험

전형별	전형 요소	대상	시험일	시험시간	시험장소
제2차 시험	교수학습능력평가 (지필)	1차 합격자	2027년 1월 5일(화)	추후 안내	대원여자 고등학교 (광진구 중곡동)
	수업실연 및 심층면접		2027년 1월 6일(수)		

※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대원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

□ 제3차 시험

전형별	전형 요소	대상	시험일	시험시간	시험장소
제3차 시험	법인 면접	1차 합격자	2027년 1월 7일(목)	추후 안내	대원여자 고등학교 (광진구 중곡동)

※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대원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

6 합격자 결정 및 통지

□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및 공고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위탁 진행
- 합격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에 따름
- 합격자 공고 : 2026. 12. 29.(화) 예정 (1차 합격자 개별 유선 안내)
-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추가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

□ 제2, 3차 시험 후 최종 합격자 결정

- 각각의 배점을 아래의 비율로 환산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

구 분	1단계 (30점)	2단계(40점)				3단계(30점)	계
		서류 (자기소개서)	교수학습능력평가		면 접		
			지필	수업실연	심층면접	최종면접	
배 점	30%	5%	5%	10%	20%	30%	100%

□ 최종 합격자 발표

- 발표 일자 : 2027년 1월 11일(월) 예정
- 공고 방식 : 개별 연락(문자)
- ※ 최종합격자는 2027년 3월 1일 임용 예정

□ 기타 유의사항

- 임용 후 학교 간 인사교류에 의해 대원학원 내 타 학교에 전보 발령될 수 있음.
- 성적 최상위자가 합격포기원을 제출하여 최종합격자가 없을 경우, 총점 성적 차점자에 대해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합격자로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
- 임용 후 법률적 결격 사유가 있거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.
- **선발 인원**에 관계없이 교수학습능력평가와 면접의 합산점수가 본교의 선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전원의 논의 후, **적격자 없음**으로 처리할 수 있음.
- 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.
- 본 계획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시행함.

7 제1차 시험 합격자 제출(증명)서류

제출 서류	대상 및 규격	비고
1) 교원자격증 사본 1부	◦ 졸업자: 교원자격증 사본 1부. (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추가 제출) ◦ 202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-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- 교사(원)자격(증)취득예정증명서(원본) 1부 ※ 2027년 2월말 졸업예정자(2월 말까지 제출)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<u>자격 및 표시과목(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)과 법정해당자격기준이 “초·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○호”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.</u> (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)	
2) 기타 서류	◦ 신규교사 임용 지원서 1부(본교 양식) ◦ 자기소개서 1부(본교 양식) ◦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(본교 양식) ◦ 대학 졸업(예정)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◦ 대학원 졸업(예정)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(해당자) ◦ 경력교사인 경우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) ◦ 기타(인증, 자격 증빙서류)(해당자) ◦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(본교 양식-희망자) ◦ 수험표 1부	

◎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서류 제출

- 제출 일시: 2027년 1월 4일(월) 10:00~16:00
- 제출 안내: 2026년 12월 29일(화) 예정 -1차 합격자 개별 유선 안내
- 제출 장소: 대원여자고등학교 2층 교무행정부
- 각종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
(단, 교원자격증은 예외)
- 문의: 02) 2204-1613

※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제1차 시험 합격이 취소됩니다.

※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2차(교수학습능력평가, 수업실연 및 면접 등) 시험 일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<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>에 의거 입사지원서·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 사항 삭제, 공정한 실력(직무능력) 평가 실시

8 최종합격자의 취소

※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.

-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
- 부정행위자 및 불공정행위자
-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·변조한 자
- 가점/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점/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
- 교사(원)자격(증)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27년 2월 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(단, 발급기관의 사유로 교원자격증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제외)
-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
-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지 못한 자 (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)

9 시험시행 일반 원칙

- 접수된 서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하며,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.
-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,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,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,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시험관리책임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.
- 시험 전형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(결시)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.
- 선발 인원 관계없이 해당 교과 지원자 중 본교가 지향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
10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.(시험 시작 이후는 절대 입실불가)
- 수험표와 신분증은 전형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)을 제시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.
- 시험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
-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 사항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.
- 시험 감독관이 시험시작 전에 소지(반입)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,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.

※ 소지(반입) 금지 물품(허용되지 않는 물품)

- 휴대전화, 블루투스기기, 이어폰, 스마트워치, 스마트센서, 태블릿PC, 노트북, 넷북, 디지털 카메라, MP3,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캠코더, 전자시계, 전자계산기, 라디오, 전자담배, 스마트안경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

- 흑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해야 하며, 기타 보조기구(귀마개, 모자 등) 착용은 불허함.
- 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미비,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, 대리접수로 인한 원서의 기재 사항의 착오,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시험관리책임관의 결정에 따름.
- 수험표와 신분증은 제2단계 전형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함.
-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 및 장소 등은 시험관리책임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대원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.
- 「사립학교법」 제53조의3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적용하고,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,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1조의2 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 - ㉠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- ㉡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- ㉢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- 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- ㉤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
- ㉦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㉧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㉨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㉩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관리책임관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기타 문의
학교법인 대원학원 대원여자고등학교 교무행정부 (☎ 02-2204-1613)
- 제2차 시험 장소(대원여자고등학교) 오시는 길
지하철 : 7호선 중곡역 1번출구 / 지선버스 (초록): 2227번, 3216번, 4212번